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

Q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재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류기간 내에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시점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중 빠른 시점까지의 특례기간이 적용되어, 기존 재류자격으로 계속 재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례기간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상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피하려면, 재류기간 내(특례기간이 되기 전)에 재류기간갱신이 허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어도 만료일 4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상의 제한

- 마이넘버 카드나 특정 재류 카드(마이넘버 카드로서의 기능)의 유효기간 특례 연장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마이넘버 카드를 본인 확인 서류나 전자증명서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금융기관에 새로운 재류카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출금·송금 등의 거래가 제한된다.

※ 조기에 신청했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재류기간 내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류기간이 다가오면, 미리 마이넘버 카드나 특정 재류 카드(마이넘버 카드로서의 기능)의 유효기간 특례 연장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① 재류기간갱신허가 신청

재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은 재류자격 종류와 회사 카테고리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3.html

② 자주 있는 질문 :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에 대하여

재류기간 갱신 등으로 재류카드가 새로 발급될 경우,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https://www.hiecc.or.jp/soudan/info/detail.html?pid=7530192337662&cate=1